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지 진 · 화 산 재 해 대 책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비(안 제5조)

-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세부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체계를 구축
- 현재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으로 지정 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설 범위를 명확화
- 나.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의 장비·인력 요건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 -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장비·인력 요건을 명시

다.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 등 관련사항 신설(안 제9조의4)

-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요건 및 절차, 관리 및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

라.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사항 신설(안 제13조의2)

-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, 실시 통지, 현장조사 방법, 평가결과 기록·관리, 세부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

마.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안 제16조)

-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등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, 그 세부 적용 대상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“고속철도”를 “고속철도 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나목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교(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.)
- 3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내진 특등급의 저수지 및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중 내진 특등급의 다목적댐
- 4.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경간장 200m 이상의 현수교(懸垂橋) 및 사장교(斜張橋)
- 5. 석유·가스시설
 - 가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
 - 나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
 - 다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
 - 라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·수량 및 설치방법 등 지진가속도계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성능검사기관의 지정)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 장비와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.

제9조의4를 제9조의5로 하고,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·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·도지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요건 및 절차
2. 지진 옥외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3.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(이하 “위험도 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·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·소유자 또는 거주자(이하 “관리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험도 평가

의 목적·일시 등을 구두(口頭)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0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의 세부사항과 그 외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·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·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”를 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”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29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29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. 6. 4.부터 시행한다.

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 세부기준(제5조의2 관련)

1. 검사장비

가. 지진가속도계측센서 검사장비

- 1) 진동대
- 2) 틸트테스트장비
- 3) 디지털 멀티미터
- 4) 기준센서
- 5) 기준기록계

나. 지진가속도기록계 검사장비

- 1) 진동대
- 2) 함수발생기
- 3) GPS 신호발진기
- 4) 정전압 공급장치
- 5) 기준센서
- 6) 기준기록계

2. 전문인력

가. 책임 검사인력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

- 1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- 2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
- 3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- 4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- 5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

나. 일반 검사인력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

- 1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2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
- 3)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- 4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- 5)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- 6) 계측, 전기, 기계, 전자, 환경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(이하 “관련분야”라 한다. 이하 같다.)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·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7) 관련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·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,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,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1호	150	300	500
나.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	법 제29조 제1항제2호	150	300	500
다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	법 제29조 제1항제3호	150	300	500
라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4호	150	300	500
마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·지반 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5호	150	300	500
바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6호	100	200	300
사. 법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7호	100	200	300
아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8호	500		
자.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9호	300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<u>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제5조(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) ① ----- ----- <u>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, 그 세부 적용 대상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. (생략) 나. <u>국립대학교</u> 다. (생략)	1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교(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.)</u> 다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의 <u>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</u>	3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<u>내진 특등급의 저수지 및 「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중 내진 특등급의 다목적댐</u>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의 <u>기준에 따른 현수교(懸垂橋) 및 사장교(斜張橋)</u>	4.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<u>경간장 200m 이상의 현수교(懸垂橋) 및 사장교(斜張橋)</u>
5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<u>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</u>	5. <u>석유·가스시설</u> 가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<u>가스공급시설 중</u>

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
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
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
설

6. 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제2호에
따른 고속철도

7. ~ 10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
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, 개수
(個數)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
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
협의하여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
압기지

나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
4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

다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
및 사업법」 제5조제4항에
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

라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
업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
석유비축시설

6. -----
-- 고속철도시설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
기의 설치 위치·수량 및 설치방법
등 지진가속도계측을 위하여 필요
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
여 고시한다.

제5조의2(성능검사기관의 지정) 법
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
도계측기의 성능검사기관으로 지
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
는 검사장비와 검사요원의 세부기
준은 별표 2의4와 같다.

제9조의4(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
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) ① 행정
안전부장관은 시·도지사등의 의견
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

제9조의4(화산재 피해경감 대책)
(생략)

<신설>

른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·도지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요건 및 절차

2. 지진 옥외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
3.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9조의5(화산재 피해경감 대책)
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2(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(이하 “위험도 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·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

를 실시하기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·소유자 또는 거주자(이하 “관리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·일시 등을 구두(口頭)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0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의 세부사항과 그 외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

	<u>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·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·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
제16조(과태료) ① 행정안전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행정안전부장관 : <u>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</u>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: <u>법 제29조제1항제2호</u>에 따른 과태료 ② (생략)	제16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: <u>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</u> ----- 2. ----- -- : <u>법 제29조제1항제4호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지진방재관리과	
연 락 처	044-205-5191